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9년 9월 3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하수과장 배덕기)

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달된 “하수도사용조례 기준”에 맞게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정(별표 6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6]

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(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)

○ m^3 당 원인자부담금 = $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$

○ $\alpha = \left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}}{100}\right)^n$

○ 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

- ※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(간선관거)를 포함한다.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- ※ 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4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달된 “하수도사용조례 기준”에 맞게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정(별표 6)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6]

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(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)

○ m^3 당 원인자부담금 = $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$

○ $\alpha = \left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}}{100}\right)^n$

○ 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

- ※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(간선관거)를 포함한다.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- ※ 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